



교육부
Ministry of Education

보도자료

교육부 홍보담당관실 ☎ 044-203-6588

[자료문의]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과장 류정섭, 사무관 전홍인, ☎ (044)203-6334

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」 입법예고

- 예비 고1 대상 선행교육과 고교과정이 포함된 반배치고사 금지
- 고교 교육과정 범위 외 대학별고사 시 총 입학정원의 10% 범위 내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/1~3년간 재정지원 사업 신청 제한

- 교육부(장관 서남수)는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」(약칭 : 공교육정상화법)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 법 시행령(안)을 4월 10일(목)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11일 공포된 「공교육정상화법」에서 위임한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, 징계 및 행재정 제재 등에 대한 세부내용과 그 밖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- 동 시행령(안)은 입법예고('14.4.10~5.20), 규제심사,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며, 「공교육정상화법」 시행 일정('14.9.12)에 맞춰 제정·공포될 예정이다.
- 시행령(안)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입학예정 학생에 대한 선행교육과 반배치 고사에서 학생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.

- 지난 3.11 공포된 「공교육정상화법」(제8조)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지필평가(중간·기말고사 등),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 대회가 금지되었다.
-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추가로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과 내용을 미리 수업하거나 출제하여 평가(반배치고사 등)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였다(시행령안 제3조).
-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반편성고사(반배치고사)를 실시하면서 시험범위에 고등학교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사교육기관에서 미리 배워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.

공교육정상화법	시행령(안)
<p>▶ 학교 내 금지 행위(제8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교시험, 각종 교내대회 등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 금지 · <u>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</u> 	⇒
	<p>▶ 학교 내 금지 행위의 범위(제3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반배치고사에서 입학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 금지 · 신입생 대상 입학 전 선행교육 금지

② 특성화중, 특목고, 자사고 등의 학교는 이전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 실시하고,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

- 국제중 등 특성화중, 외고·국제고·과학고 등 특목고, 자사고,

자공고,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는 이전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해야 한다.

공교육정상화법	시행령(안)
<p>▶ 학교 입학전형(제9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</u> 입학전형은 내용과 방법을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으로 한정 	<p>▶ 규제 대상 학교(제4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성화중 · 특목고(과학고, 외고, 국제고) · 자사고, 자공고 · 자율학교 중 전국단위 모집학교 ·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

○ 이와 아울러 이들 학교는 입학전형에 경시대회 실적, 인증시험 성적, 각종 자격증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 및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, 프로젝트 활동 등도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(시행령안 제4조제2항).

공교육정상화법	시행령(안)
<p>▶ 학교 입학전형(제9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교 밖 경시대회, 인증시험 성적, 각종 자격증, <u>그밖에</u>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은 입학전형 시 반영 불가 	<p>▶ 입학전형 반영 금지(제4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부 사설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캠프,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

○ 또한, 이들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선행 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(시행령안 제4조제3항).

- 교육감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(시행령안 제4조제4항).

○ 이에 대해 교육부는 특목고, 자사고 등의 고교 입시 준비를 위

해 선행교습을 받는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.

③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형 종료 후 “선행학습 영향평가”를 실시해야 한다.

-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“(가칭)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” 구성 시 고교 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- 또한,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기 발표된 “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(시행령안 제5조).
- 이로 인해 그 동안 학교 공부 외에 대학별고사를 따로 준비해야 했던 학생들의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④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(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소속) 심의결과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교원 징계, 학교 및 대학에 대한 행·재정 제재 기준도 제시되었다.

- 교육부장관(교육감)은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, 착오·경과실인 경우에는 경징계를, 고의·중과실인 경우에는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하여야 하고(시행령안 제11조),
- 사안이 중대한 경우 관련 학교 및 대학에 대해서는 교원 징계와는 별도로 학교운영경비 5~20% 삭감, 1~3년간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, 그리고 총 입학정원의 5~10% 범위에서의 모집정지,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(시행령안 제12조).
- 모집정지·정원감축 등 행·재정 제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

분 사실을 안 후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(교육감)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(시행령안 제13조).

[별표(요약)] (시행령안 제12조 관련)

▶ 법 제8조제1항(선행교육 금지) 위반

- 1차 불이행 : 학교운영경비의 5% 범위에서 삭감
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총 입학정원의 5% 범위에서 모집정지
- 2차 불이행 : 학교운영경비의 10% 범위에서 삭감
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총 입학정원의 5% 범위에서 정원감축

▶ 법 제8조제2항(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) 위반

- 1차 불이행 : 학교운영경비의 10% 범위에서 삭감
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총 입학정원의 10% 범위에서 모집정지
- 2차 불이행 : 학교운영경비의 20% 범위에서 삭감
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총 입학정원의 10% 범위에서 정원감축

▶ 법 제9조(학교 입학전형 준수사항) 위반

- 1차 불이행 : 학교운영경비의 10% 범위에서 삭감
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총 입학정원의 10% 범위에서 모집정지
- 2차 불이행 : 학교운영경비의 20% 범위에서 삭감
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총 입학정원의 10% 범위에서 정원감축

▶ 법 제10조(대학별고사 준수사항) 위반

- 1차 불이행 : 총 입학정원의 10% 범위에서 모집정지,
향후 1년간 재정지원 사업 신청 제한
- 2차 불이행 : 총 입학정원의 10% 범위에서 정원감축
향후 3년간 재정지원 사업 신청 제한

5] 기타

-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·연구와 선행교육 개선대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해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(시행령안 제2조).
-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되, 재적

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,

○ 선행교육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전문가, 각급 학교 교사,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(시행령안 제6조~제8조).

□ 교육부는 이번 「공교육정상화법」의 제정 취지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정과정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.

□ 또한, 「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」 입법예고 후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해석 및 구체적인 사례별 대응 방안에 대한 『실행 매뉴얼』을 마련할 예정이며

○ 권역별 설명회, 교원대상 연수 등을 통해 8월말 까지 동 법안의 제정 취지 및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동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임도 밝혔다.

- 붙임 1. 「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」 입법예고 공고문
2. 법-시행령 2단 비교표
3. 실행 매뉴얼 개요
4. 질의 응답 자료
5. 인포그래픽스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공교육진흥과 전홍인 사무관 (☎ 044-203-6334)